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18
----------	------

2025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임규호 의원 (찬성자 23명)
나.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규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자율방범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념행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2025.10.28. ~ 1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단체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31개의 경찰서 관할구역 내 자율방범대의 연합단체 30개의 연합대가 있으며, 자율방범대는 456개로 방범대원은 총 9,268명(2025년 9월 기준)임.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현황 〉

- 근거법령 : 자율방범대법,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각 자치구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25개)
- 조 직 : ▲연합회(시) 1개 ▲연합대(자치구) 30개 ▲방범대(동) 456개
- 회원현황 : 9,268명(2025.9.30. 기준)
- 주요활동 : 범죄 취약지역 범죄예방활동(자체순찰, 합동순찰) 등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현황 〉

- ▶ 설립년도 : 2009. 2.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1.3.21.)
- ▶ 임 원 : 연합회장(허○○, 男), 수석 부회장, 부회장 11명, 사무처장 등
-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4길 5, 101호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연합대, 방법대 현황 〉

연 번	자치구	구 성 현 황 ('25.9.30.기준)			연 번	자치구	구 성 현 황 ('25.9.30.기준)		
		연합대	자율 방법대	대 원 (명)			연합대	자율 방법대	대 원 (명)
1	종로	2	22	437	14	마포	1	16	332
2	중구	2	11	203	15	양천	1	18	460
3	용산	1	18	297	16	강서	1	19	457
4	성동	1	17	325	17	구로	1	21	476
5	광진	1	21	350	18	금천	1	14	263
6	동대문	1	15	426	19	영등포	1	28	609
7	중랑	1	21	421	20	동작	1	20	298
8	성북	2	20	432	21	관악	1	22	460
9	강북	1	12	176	22	서초	2	15	517
10	도봉	1	15	260	23	강남	1	22	404
11	노원	1	16	248	24	송파	1	24	484
12	은평	2	17	325	25	강동	1	19	357
13	서대문	1	13	251	계	25개	30	456	9,268

※ 출 처 :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2025.11.10.) 재인용.

1)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를 직접 실시(안 제5조의2 제1항)하거나, 자율방범단체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5조의2제2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5조의2 제1항은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이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가 개정(2025.8.14.) 됨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5조의2 제2항은 민간의 자율방범단체 기념행사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8.14. 공포, 2026.2.15. 시행)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지원 등)는 시장이 자율방범단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
2.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 등 공익활동
3.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 시행일(안 부칙)

○ 안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2026.2.15.)을 감안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를 2026년 2월 1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이나 충돌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법률 제21020호 개요

- 법률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결일 : 2025.7.23.
- 공포일 : 2025.8.14.
- 시행일 : 2025.2.15.
- 주요내용 :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제12조제1항).

-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봉사 정신 고취라는 법령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촉진, 민관 협력 증진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조례 개정 후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중복지원 및 타 민간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임규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성준,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민병주, 박승진,
박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한 신, 홍국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자율방범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념행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u></p> <p>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u>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u>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	△	[추계 곤란]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검토계획된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5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행사)의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업지원과)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
- 다만,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1차년도인 경우 자율방범중앙회 차원에서 전국단위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주관 지역행사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형태가 계속될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 지출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임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추진여부 및 단위규모 결정 필요) 단위별·인원별 추진규모 편차가 크므로 정책적 결정 전제 필요
-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행사 특성상 전국단위, 광역단위(서울시), 기초단위(자치구) 등 단위별로 상이한 규모를 보이므로 추진여부 결정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유사사례인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문의결과 전국단위 및 관서별 추진으로 확인) 소요비용 등을 활용한 합리적 추계 또한 현재로서는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